

의안번호	제48호
의 결 년 월 일	2026. 4. 22. (제337회)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금 산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4. 10.

#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	------

제출년월일 : 2026. 4. 10.  
제 출 자 : 금 산 군 수

## 1. 개정이유

-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정비(별표 1)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차계약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 띄어쓰기 등 조문 재정비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기 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3019)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2842)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6931)
  - 입법예고(2026. 2. 20. ~ 2026. 3. 12.) : 제출의견 없음

##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치유방”을 “자연치유마을”로, “단체, 마을운영위원회 등을”을 “단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란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제5조제1호 중 “아토피”를 “아토피·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2.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제5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업무 관련 팀장”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아토피 치유학교”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치유마을 치유방”을 “자연치유마을”로, “아토피 가족”을 “아토피·천식 환자 가족”으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대상 등)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입주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가족으로, 해당 자녀가 금산군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중 어느 한 곳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전학 예정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 예약 신청일이 빠른 가족
2.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저학년일수록 우선으로 한다)
3. 자녀 수가 많은 가족

③ 임차인과 아토피·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의 주민등록 상 주소는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인 자녀의 보호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의 제목 “(임대계약 취소)”를 “(임대계약 해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를 “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제1항 중 “자연 치유마을”을 “자연치유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관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7항) 중 “처분및”을 “처분 및”으로 한다.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관리 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에 관한 권리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등을 적용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관리·운영자”란 아토피 <u>치유방</u>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u>단체</u>, <u>마을운영위원회</u> 등을 말한다.</p> <p>6. (생략)</p> <p><u>&lt;신설&gt;</u></p> <p>제5조(기능)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아토피</u> 환자가족 이주 정착 및 치료</p>	<p>제3조(정의)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자연치유마을</u>----- ----- ----- ----- <u>단체</u>를 ----- --.</p> <p>6. (현행과 같음)</p> <p>7. “<u>아토피·천식 안심학교</u>”란 <u>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u></p> <p>제5조(기능) ----- -----.</p> <p>1. <u>아토피·천식</u> ----- -----</p>

2. 아토피 환자가족 일자리 창출

3. (생략)

4. 자체공부방 운영

5. 임차인 가족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6. 친 자연 농산물 제공을 위한 텃밭 가꾸기 사업

7. 아토피 가족 캠프운영 시 숙박시설 제공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 및 군북면장 등 당연직 위원과 의회 의원, 교육계, 의료계, 상곡리 마을 대표, 이주자 가족 대표 등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⑥ (생략)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2.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과장 -----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업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 3. (생 략)
4. 아토피 치유학교 지원에 관  
한 사항
5. (생 략)

제11조(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  
약)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치  
유방에 입주를 희망하는 아토피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을  
실시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리  
한다.

② (생 략)

제12조(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  
위)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차  
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를 위한 사전예약자로서  
예약날짜가 빠른 순위
2. 예약날짜가 같은 경우 초등  
학생이 있는 가족을 우선하며  
자녀수가 많은 가족과 저학년  
을 우선으로 함.

--.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4.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  
약) ① ----- 자연치유마을-----  
----- 아토피  
·천식 환자 가족-----  
----- 별표 2-----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  
대상 등)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  
을의 입주대상은 입주신청일 현  
재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  
은 자녀를 둔 가족으로, 해당 자  
녀가 금산군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유치원·초  
등학교·중학교 중 어느 한 곳  
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전  
학 예정인 경우로 한다. (이 경

제13조(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장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우 해당 질환에 대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 예약 신청일이 빠른 가족

2.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족 (저학년일수록 우선으로 한다)

3. 자녀 수가 많은 가족

③ 임차인과 아토피·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의 주민등록 상 주소는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인 자녀의 보호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장 제한)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자

2. ~ 4. (생략)

제14조(임대계약 취소)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제16조(농산물 판매장 등의 설치)

① 관리·운영자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자 및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은 지역주민이 직접 재배 및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임대계약 해지) -----

-----  
-----  
-- 해지-----.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6조(농산물 판매장 등의 설치)

① ----- 자연치유마을-----  
-----  
-----.

② -----  
-----  
----- 별표 1-----  
-----.

③ (생략)

제17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치유방  
일부를 농촌지역 인구유입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마을운영  
위원회 등에 시설관리 부분에  
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  
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약정  
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  
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일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  
야 한다.

④ 아토피 치유방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  
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3호서  
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  
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주택관리 전문  
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농업  
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 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결산수입금액의 20%를 수리 또는 수선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③·④ (생략)

⑤ 수탁자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에 관한 권리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전대할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관리 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수탁자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에 관한 권리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삭 제>

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 세출 등) ①·② (생략)

③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마을회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공동사업, 마을복지사업 등 마을 공익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익금은 배분기준 [별표 3]을 준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⑤ -----  
-----  
처분 및 -----  
---

제21조(세입 세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2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등을 적용한다.

[별표 1]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료 징수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유 형	보 증 금	임 대 료(월)
치유방	40㎡~45㎡	2,000,000	150,000
	55㎡~61㎡		200,000
	80㎡~85㎡	5,000,000	350,000
목조건축체협장	68.52㎡	2,000,000	250,000
농산물 판매장			매월 매출액의 10%

[별지 제1호서식]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차계약서(제11조제2항 관련)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임대할부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원정 (W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중도금	금	원정은	년 월 일	일에 지불하며
잔금	금	원정은	년 월 일	일에 지불한다.
차임	금	원정은 (선불로)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계약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3.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가 금산군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 어느 한 곳에 재학하지 않을 경우
4. 임차인과 아토피·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소재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소지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다만, 임차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인 자녀의 보호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매 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금산군수

임차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비용추계서 (제4조제2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료 부과

나. 관련 조문 : 안 제4조(임대료 징수 등), 별표 1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신규주택 수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함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단위: 원)

구분	내용	동	산출기초	금액	비고
임대료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주택	13	350,000*13동*12개월	54,600,000	2026년 7개월 추정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 3. 작성자

보건소장 채기주(☎ 041-750-43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31,850	54,600	54,600	54,600	54,600	250,250
세외수입 (주택 임대료)		31,850	54,600	54,600	54,600	54,600	250,250
세 출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 제12호 생략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의2 ~ 제21호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